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92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유승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류승희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 8. 5. 접수 제90791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4. C에게 별지 대출내역표 중 이 사건 1차 대출 란 기재와 같이 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22. 9. 5. 위 대여금채권의 잔액 34,580,000원을 별지 대출내역표 중 이 사건 2차 대출 란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C의 원고에 대한 2023. 10. 4. 기준 채무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금          | 편입 전 이자    | 연체이자     | 합계          |
|-------------|------------|----------|-------------|
| 32,562,838원 | 2,156,802원 | 104,201원 | 34,823,841원 |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2013. 6. 20. C과 피고에게 2009.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22. 8. 5.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2. 8. 5.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2차 대출일이 2022. 9. 5.이다. 원고는 이른바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시행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분명히 C의 책임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C 지분이 이전된 사실을 대출 시행 전에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3. 11. 3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도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대출일이 2022. 9. 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가 2023.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C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출은 이 사건 1차 대출에 대한 이른바 대환대출로서 양 채무는 동일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대출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인

이 사건 1차 대출금채권이 성립하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대출채무는 대출과목, 금리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 1차 대출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 이 사건 2차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참조). 또한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4319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대출채무와 이 사건 2차 대출채무의 대출과목이나 대출조건이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대출채무는 이 사건 1차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실행된 것으로 양 채무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출을 실행하기 앞서 C을 상대로 신용대출 고객평가를 하였는데 그 고객평가 내역서(갑 제10호증) 개별신용대출종류 란에 ‘장기분할상환 전환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차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2호증) 제19조 대출금 수령계좌 란에 ‘전금 요청’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C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2차 대출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고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1차 대출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대출약정이 체결된 2022. 9. 5. 현재 C의 이 사건 1차 대출채무의 잔액은 42,000,000원(같은 날 11:23:58 기준)이었다. C은 위 이 사건 1차 대출채무의 잔액 42,000,000원과 이 사건 2차 대출금액 34,58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7,420,000원을 같은 날 13:21:57부터 13:36:40까지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16:17:45 이 사건 2차 대출을 실행하였고 16:17:53 이 사건 1차 대출약정을 해지 처리하였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 1)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8. 5.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그 반면에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E카드채무(2건) 17,182,000원, 3,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3건) 50,000,000원, 6,851,000원, 3,000,000원 합계 80,033,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 2) C의 추가 적극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C에게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이외에도 F에 대한 4,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주식회사 G에 대한 32,562,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H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주식회사 G에 대한 5,500만 원 상당의 주식 55,000주를 비롯한 약 5,200만 원 상당의 여러 주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F, 주식회사 G, H에 대하여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C이 2021. 12. 31. 현재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식 5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F, 주식회사 G, H에게 그 주장의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식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과 5,5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여타 약 5,200만 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9. 12. 24. 이 사건 아파트를 편의상 남편인 C 명의로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3억 8,600만 원(계약금 3,860만 원, 중도금 2억 3,160만 원, 잔금 1억 1,580만 원)에 관하여 계약금 중 2,230만 원, 중도금 2억 3,160만 원 전액, 잔금 중 8,500만 원을 피고의 자금(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포함)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도 피고가 마련하였던 기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25. C에게 형식상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하고 이를 통해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2. 8. 5. 형식상 증여의 형태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자 D, 매수자 C, 공급대금 3억 8,600만 원(1차 및 2차 계약금 합계 3,860만 원, 1차 내지 6차 각 중도금 합계 2억 3,160만 원, 잔금 1억 1,580만 원)’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09. 12. 24.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10. 1. 25.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73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11. 8. 18. 아버지 I에게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3. 4. 26. 자신의 불상의 계좌에서 232,302,271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부부는 가족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생활공동체로서 별다른 명목이나 동기 없이도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임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9. 12. 24. 분양계약 당시에 매도인 D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초에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 중 C에게 마쳐진 2분의 1 지분은 명의수탁자인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채무 상황이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C과 부부 사이인 점,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C에게 주문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3억 8,600만 원 중 피고가 지급한 3억 5,140만 원을 제외한 3,460만 원은 부부인 C과 피고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중 절반인 1,73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위 1,730만 원만큼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해 금전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중 일부가 그 출연액에 상응하여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일부 출연한 금원이 있다고 하여 그 사해성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에만 미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별지